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이은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690 발 의 년 월 일: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:이은림 의원(1명) 찬 성 자:고광민, 곽향기, 김원중,

>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혜영, 남창진, 박 석, 박성연, 신동원, 윤영희, 이경숙, 이상욱, 이숙자, 이효원, 임춘대, 허 훈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관내 설치·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·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 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. (안 제2조)
- 다. 시장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- 라.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가 수질검사 결과를 현장 이용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토록 함. (안 제5조)
- 마. 시장이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·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)
- 바. 시민이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물환경보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「물환경보전법」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이용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물놀이형 수경(水景)시설"(이하 "수경시설"이라 한다)이란 「물환경보전법」(이하 "법"이란 한다)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(이하 "설치·운영자"라 한다)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4조(설치·운영자 교육) 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·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.
 ② 수경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5조(수질검사 결과공개) ① 수경시설 설치·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시장이 정한다.

- 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한 당월 말일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6조(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) ① 시장은 수경시설 및 수질의 원활한 유지·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
 - ② 설치·운영자 또는 해당 자치구는 시장이 제1항의 수경시설 종합정보시 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정보 입력 등 시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7조(수질검사 요청) 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- 제8조(업무의 위임)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(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- 단, 같은 조례안 제4조(설치·운영자 교육)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·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4조	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	4,600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(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로 서울시 2023년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설명서 첨부(붙임2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

추계분석관 김지혜

☼ 02-2180-7953

e-mail: kjh0123@seoul.go.kr

[붙임 1] 2024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사업설명서 □ 사업내용 ○ 사업기간 : 2024.1.1. ~ 2024.12.31. ○ 사업수행주체 :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○ 추진방법 :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, 운영자 교육 ○ 사업의 주요내용 : 수질검사 소모품 구매,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 교육자료 제작

[붙임 2] 2023년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3.1.~2023.12.

○ 지원대상 :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중대재해시설 관리 사업장 5개소

○ 사업수행주체 : 푸른도시여가국, 사업장

○ 추진방법 : 푸른도시여가국 주관 관리시스템 개발, 사업장 컨텐츠 및 의견제공

○ 사업의 주요내용

- 중대재해사업장 작업별, 장소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 위험 시설물 확인 점검

- 종사자별 안전관리 전달사항 공유체계 구축

- 종사자 의견 청취 창구 마련

- 사업장 내 건설공사장 추진현황 관리